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선정적인 사건 보도나 왜곡 보도의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를 거쳐야 할 기관을 명시(안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18조의2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경찰청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u> <u>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18</u> <u>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u> <u>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u> <u>기관의 장을 말한다.</u> <u>1. 법무부장관</u> <u>2.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3. 경찰청장</u> <u>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u> <u>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u> <u>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u>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382